

1. 법률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근거 마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제도화)

1. 법률*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5/9/16 개정 · 2026/3/17 시행)

1) 개정 이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기 위함
-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근거 신설(제9조 제30항·제31항, 제229조 제6호)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제229조의2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되 모집가액을 5백억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집합투자자재산에 대한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의무 등을 규정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제12조 제2항 제6호)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제81조 제1항, 제5항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법정 투자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대여(제83조 제4항 제2호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전대여가 가능하도록 함

□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제444조 제9호의2 신설)

-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9/23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해 온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2026. 9. 25. 종료 예정)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2025. 9. 30. 종료 예정)의 규제특례를 제도화하기 위함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투자자가 증권사에 소수단위로 매매주문 시, 증권사가 이를 자기분으로 채워 온주(complete share)로 만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온주를 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주는 서비스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 비상장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및 조각투자(부동산 · 음원 등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수익증권을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장외시장

2) 주요 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제7조 제4항 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4호 사목 신설)
 -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의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2026. 9. 25. 예정) 이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 등 규제를 받지 않고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주식 발행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업무 단위 신설 및 그 업무기준 마련 등(제1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2항 제5호의2 신설, 제19조의3 제1항, 제120조, 제137조 제3항, 제177조, 제178조 제2항 삭제, 제178조의2 신설, 제354조의2 제5호 신설,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20)
 - 증권의 모집·매출에 대하여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산출할 때 합산하지 않는 자(전문투자자 등)의 인정 범위를 다자간 매매를 전제로 하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에서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까지 확대(연고자 제외)
 - 다자간 매매 방식의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한 투자중개업을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업무 단위로 신설
 -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매매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하고,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와 매도호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다자간 매매 방식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매매거래대상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해당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서 소액투자자가 하는 증권의 매출에 대하여는 매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는 대신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다자간 장외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제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